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5. 11.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5년 4월 2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5년 5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12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5년 5월 6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 유 근)

가. 개정이유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됨은 물론 급속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 내용의 다양성이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 국가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함(안 제2조)
- 지원내용은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 門 委 員 이 남 석)

-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 조례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 10.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추가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기타 부적정한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제1조 목적규정 내용 중 근거법 적용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권자 등」 으로 수정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5. 5. 6

제 출 자 : 박승석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제1조 목적규정 내용 중 근거법 적용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안)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등”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권자 등” 으로 수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 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등”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권자 등” 으로 수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u> 제4조제1항에 의하여 <u>국민기초생활보장</u> <u>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u> <u>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u>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u> <u>법 등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u> <u>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u> <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년월일 : 2005.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됨은 물론 급속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내용의 다양성이 요구되어지는 실정 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명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제1조)
- 나. 지원내용에 대하여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등을 신설하여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제3조)

3.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조례(안) 별첨
 - (1) 입법예고(2005.03.25 ~ 04.14) 결과 : 의견수렴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절보상품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교육관련 경비 지원
5.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6.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